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이영실 의원 외 21명
나. 의안번호: 제2169호
다. 발의일자: 2024. 10. 15.
라. 회부일자: 2024. 10. 18.

2. 제 안 사 유

- 한강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다양한 생물종의 보금자리이자 도시 생태계의 핵심 축임. 그러나 최근 그레이트 한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해 한강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이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 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한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조례의 목적에 생태환경 개선, 생물다양성 증대, 이용환경 개선 등을 추가함
(안 제1조).
- 나. '생물다양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3호).
- 다. 한강공원 생태 보전 시책의 장·단기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분석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4호).
- 라. 시장의 책무로 한강의 환경 훼손 최소화 및 홍보·참여 활성화 내용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마. 시민의 책무에 한강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시책에 대한
적극적 협력 의무를 추가함(안 제6조제2항).
- 바. 한강 시책 추진에 따른 생태환경·기능·생물다양성 변화 등 시책 집행의
효과와 실적 현황을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2호).
- 사. 한강 이용현황 및 프로그램·행사 참여 현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0조제2항제3호).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의 이용 환경 개선 목적의 개발 행위와 생태적 가치 유지 목적의 보전 행위 간 균형 유도를 위해 현행 조례에서 미흡했던 한강 생태계 보전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나. 세부 검토 의견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중 ‘한강공원의 생태적 보전’을 ‘한강의 생태환경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대’로, ‘시민의 이용’을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과 도시환경 개선’으로 보충해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

다만, 관련 법령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 「자연환경보전법」 등과의 용어 일관성을 고려하여 생태환경 ‘개선’이 아닌 ‘보전’이 더 적절할 것임.

- 안 제3조는 안 제1조에 포함된 ‘생물다양성’의 정의를 관련 법령¹⁾에 따라 현행화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
- 안 제4조는 생태적 보전에 관한 계획이나 사업이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집행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업의 장·단기적 변화를 관찰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태 보전 **시책의 실효성 확보**에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한강의 환경 훼손 최소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²⁾와 시민참여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활성화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한강의 생태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안 제6조는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생태적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책에 협력³⁾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며, 이는 시장의 책무에 상응하는 시민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

- 안 제10조는 한강공원 백서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시책 집행 효과, 실적, 시민참여 관련 현황 등을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별첨]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의 내용 일부만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책 집행에 따른 장·단기적인 효과와 시민참여로 인한 영향 등까지 공개하여 시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것임.

2) 제5조(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공원의 보전과 시민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제6조(이용시민의 책무)

①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은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강공원 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한강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4) 한강 자연생태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 시책과 추진 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작성함.

5) 2022 한강공원 백서[부제:시민 곁 가장 가까운 자연, 한강] 본문 p.23

3.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

2022년 자연형 호안 복원 잠실 한강공원 

위치

잠실한강공원
(잠실선착장 ~ 잠실대교),
연장 0.8km

사업내용

자연형 호안 조성,
수변식생대 개선, 등

잠실 선착장에서 잠실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0.8km 규모의 호안을 돌, 자갈, 식물 등 자연 소재를 활용하여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호안의 형태를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생물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 흙과 바위로 수변 완충지대를 확보하면 퇴적물이 쌓이고 자생식물이 출현하여 어류가 알을 낳거나 몸을 숨길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무 장대를 설치해 조류도 휴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생식물, 어류 등 풍부한 먹잇감이 있는 자연호안 한강에는 더 많은 철새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공사기간

2022. 4. ~ 2023. 7. (완공예정)



복원전



복원후



조감도



서울시는 하천 생태계가 되살아나 한강 서식종과 생태계 다양성이 증가하고, 수변 경관을 향상시켜 물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2025년까지 한강 내 자연형 호안 복원 대상지를 모두 완공시킬 계획입니다.